

# 대한민국과 크로아티아공화국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의 이행을 위한 행정약정

대한민국의 권한 있는 당국과 크로아티아공화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2018년 12월 18일 서울에서 서명된 대한민국과 크로아티아공화국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 제17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 제1부 일반규정

### 제1항 정의

이 행정약정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협정에서와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 제2항 연락기관 및 권한 있는 실무기관

1. 협정 제17조제2항에 언급된 연락기관 및 권한 있는 실무기관은:
  - 가. 한국에 대해서는, 국민연금공단;
  - 나. 크로아티아에 대해서는, 크로아티아 연금보험기관을 말한다.
2. 연락기관은 협정과 이 행정약정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절차와 서식을 공동으로 결정한다.

## 제2부 적용법령

### 제3항 적용법령 증명서

1. 한쪽 계약당사자의 법령이 협정 제2부의 규정에 따라 적용되는 경우, 그 계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실무기관은, 사용자 또는 자영자의 요청에 따라, 근로자 또는 자영자가 그 계약당사자의 법령을 적용 받는다는 것과 유효 기간이 표시된 증명서를 발급한다. 이 증명서는 그 근로자 또는 자영자가 다른 쪽 계약당사자의 강제보험에 관한 법령으로부터 제외된다는 것을 증명한다.
2. 이 항 제1호에 언급된 증명서를 발급하는 한쪽 계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실무기관은 이 증명서의 사본 1부를 해당 근로자 또는 자영자 및 그 근로자의 사용자와 다른 쪽 계약당사자의 연락기관에 제공한다.

## 제3부 급여에 관한 규정

### 제4항 청구서 처리

1. 한쪽 계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실무기관이 다른 쪽 계약당사자의 법령에 따른 급여청구서를 접수한 경우, 그 권한 있는 실무기관은 청구서가 접수된 날짜를 표시하여 다른 쪽 계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실무기관에 그 청구서를 송부한다.
2. 앞의 한쪽 계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실무기관은 예외적인 상황에서 필수적인 경우, 다른 쪽 계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실무기관이 청구인의 급여수급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이용 가능한 서류를 청구서와 함께 송부한다.
3. 앞의 한쪽 계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실무기관은 청구서에 포함된 청구인과 그/그녀의 가족에 관한 개인 정보를 검증하고 그 정보가 증빙서류에 의하여 입증됨을 확인한다.

4. 앞의 한쪽 계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실무기관은 이 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언급된 청구서 및 서류에 추가하여 그 계약당사자의 법령에 따라 완성된 보험기간을 표시하는 연락서식을 다른 쪽 계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실무기관에 송부한다.
5. 이어서 다른 쪽 계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실무기관은 청구인의 수급자격을 결정하고 그 결정을 청구인과 앞의 한쪽 계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실무기관에 통보한다.

## 제5항 급여의 지급

1. 계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실무기관은 수급권자에게 급여를 직접 지급한다.
2. 한쪽 계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실무기관이 그 계약당사자의 통화가 아닌 외화로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환전율은 지급이 이루어지는 날에 유효한 환율로 한다.

## 제4부 보칙규정

### 제6항 행정협조

1. 협정 제17조 제1항에 따라 행정 협조가 요청되는 경우, 협조를 제공하는 권한 있는 실무기관의 일상적인 인력 및 운영비용은 무료로 제공된다. 양 계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 또는 권한 있는 실무기관에 의해 공동으로 결정되는 경우를 제외한 다른 비용은 상환될 수 있다.
2. 한쪽 계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실무기관은 요청이 있는 경우, 청구인 또는 수급권자의 장애와 관련하여 그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의료 정보와 서류를 다른 쪽 계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실무기관에 무료로 제공한다.

3. 한쪽 계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실무기관이 다른 쪽 계약당사자의 영역 내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청구인 또는 수급권자로 하여금 의료검진을 받을 것을 요구하는 경우, 앞의 한쪽 계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실무기관의 요청에 따라, 다른 쪽 계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실무기관은 자신의 규칙에 따라 의료검진을 요청하는 권한 있는 실무기관의 비용으로 이 검진의 실시를 주선한다.
4. 앞의 계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실무기관은, 발생한 비용의 세부 내역서를 접수한 경우, 이 항 제3호의 적용한 결과에 따라 지급해야 할 금액을 다른 쪽 계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실무기관에 지체 없이 상환한다.
5. 각 계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실무기관은 사망, 주소 변동, 혼인 또는 동반자 관계 상태의 변동, 보험상태를 포함하여 관련 수급권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들을 각 법령이 규정하는 범위 내에서 다른 쪽 계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실무기관에 통보한다. 세부적인 절차는 연락기관 간에 결정된다.

## **제7항 통계의 교환**

양 계약당사자의 연락기관은 이 행정약정 제3항에 따라 각 권한 있는 실무기관이 발급한 가입증명서의 수와 협정에 따라 지급한 급여에 관한 통계를 매년 교환한다. 이 통계는 급여의 유형별로 수급권자의 수와 급여의 지급 총액에 대한 자료를 포함한다. 이 통계는 연락기관 간에 공동으로 결정된 서식으로 제공된다.

## **제8항 발효**

이 행정약정은 협정의 발효일에 효력이 발생하며, 동일한 존속기간을 가진다.

제9항  
추가원칙

이 행정약정은 어떠한 법적 의무도 창설하지 아니한다. 이 행정약정은 협정과 양국의 각 법령의 틀 내에서만 이행된다.

동등하게 유효한 한국어 그리고 크로아티아어, 영어로 각 2부씩 서명되었다.

해석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의  
권한 있는 당국을 위하여

크로아티아공화국의  
권한 있는 당국을 위하여

\_\_\_\_\_  
일자 :  
\_\_\_\_\_  
장소 :  
\_\_\_\_\_

\_\_\_\_\_  
일자 :  
\_\_\_\_\_  
장소 :  
\_\_\_\_\_